

□ 촬영 기준

구 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야 한다. (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초(mAs) 전후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초(mAs) 전후(150밀리암페어 초컨드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충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영상 작업	아래의 세 종류 영상(충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충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2) 표준연산 사용 (3) 창 중심은 35하우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Unit), 창 간격은 350하우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우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우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우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우스필드 단위(HU)를 사용



석면! 피해 구제제도 안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안내

제도시행 첫해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0. 12.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과 특별유족인정신청 사전접수를 시행합니다.

□ 제도 안내 및 접수처

제도안내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주 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 연락처 : 032-590-5032~5035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env-relief.or.kr

접수처 (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신청)

- 관할 시·군·구(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석면피해구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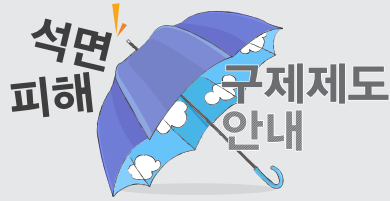
■ 의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후관리, 진단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2010년 3월 22일 공포)에 근거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석면피해 구제법 적용 대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및 유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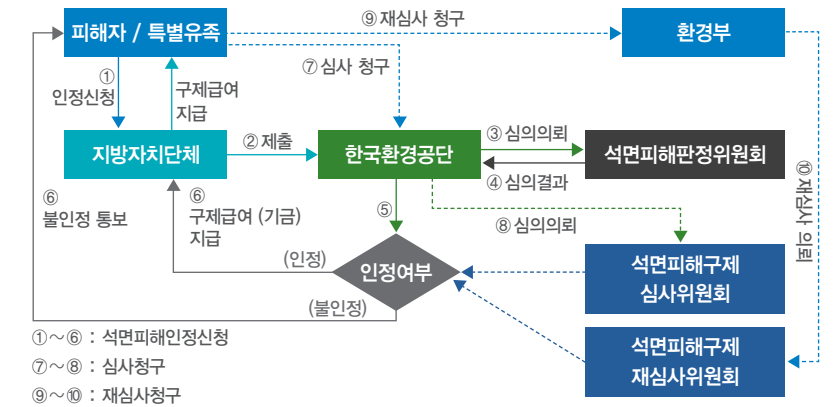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www.env-relief.or.kr

☐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도

구분	기관	주요 업무	비고
관리주체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 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

-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 신청절차**



※ 단, 특별유족인정신청은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4.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5.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인정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회사폐업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 신청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질병·장애·사고 등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구분	질병진단서류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 확인
원발성 악성중피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해당 없음
원발성 폐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발성 폐암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 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필름 또는 CD파일 · 폐기능장애 검사서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 신청

- 특별유족인정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회사폐업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혼 관계증명서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 신청인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질병·장애·사고 등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자
원발성 악성중피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원발성 폐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 진단서(원발성 폐암일 것)와 · 의학적 판단 증빙자료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애 검사서(폐기능장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애 검사서(폐기능장애 확인)

☐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 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 구제급여 금액**

구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액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 '11년 기준 906,830원/월
	제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 · '11년 기준 652,91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제2급
제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 · '11년 기준 217,63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 최저생계비 기준일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매년 변경됨)

※ 석면폐증의 경우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후에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음.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 ['11년도 기준 : 2,05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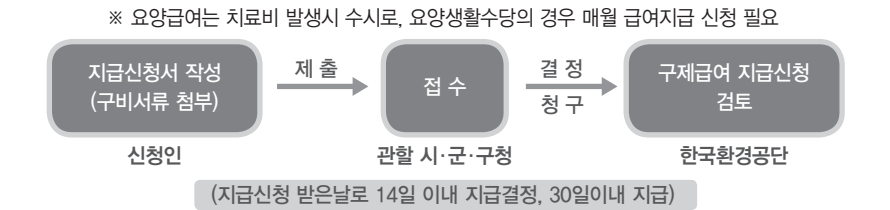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30,877,500원)	※ 특별장의비와 함께 3년 기간 내에서 분할 지급 (년 1회 지급)	
석면폐증	1급		장의비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438,750원)
	2급		장의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0,292,500원)
3급	장의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5,146,250원)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구제급여 신청 방법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석면피해판정 인정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 석면피해 인정기준

구분	피해 인정 기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발성 폐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의 검사 등을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μm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μm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이 있는 경우 	
석면폐증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피해인정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 및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한한다. (단, 법시행전 이미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가능)